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505
----------	-------

발의연월일 : 2021. 9. 10.

발 의 자 : 고민정·오영환·최혜영
조오섭·위성곤·김원이
용혜인·이규민·김정호
기동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하여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제도를 통하여 보호대상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 역시 실질적으로 부모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양육부담이 동등함에도 불구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지 못하는 차별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에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하는 아동을 포함하도록 하여 위탁아동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가정위탁을 하는 자의 일·가정 양립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9조의2제

1항).

법률 제 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 본문 중 “자녀를”을 “자녀 또는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정위탁 중인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아동”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illegible]